

정보 공개 동반 통지서

안내

42 CFR 2.32 규정에 의거,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루어질 모든 재공개를 포함하여, 다음 페이지에 기재된 서면 진술문 및 동의서 사본, 또는 제공된 동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반드시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.

서면 동의서에 필수적인 **Part 2** 문구가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, 정보 공개(ROI) 요청에 응답할 때,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. 예를 들면:

- 기밀 회원 정보 공유 승인서(ASCFI) 양식
- 해당 진술문이 포함되지 않은 **Part 2**에 해당하지 않는 제공자 또는 법인의 ROI 양식

다음 진술문은 42CFR2.32에서 발췌한 것이며, "환자(Patient)"라는 용어는 "고객(Client)"과 동일한 의미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본 안내(Instruction) 페이지를 정보 공개 서류에 포함하지 마십시오.

(Korean)

정보 공개 동반 통지서

귀하에게 공개된 이 기록은 연방 비밀유지 규정(42 CFR part 2)에 의해 보호됩니다. 이 규정은 귀하가 이 기록 또는 이 기록에 포함된 정보를 설명하는 증언을 환자의 동의 없이, 어떠한 연방, 주 또는 지방 당국이 환자를 상대로 진행하는 민사, 형사, 행정 또는 입법 절차에서 환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, 이 기록이나 이 기록에 포함된 정보를 설명하는 증언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. 단, 42 CFR 2.12(c)(5)에 규정된 경우나 42 CFR 2.64 또는 2.65에 따라, 법원의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. 또한, 연방 규정은 다음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기록을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공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:

(i) 이 기록에 포함된 정보의 당사자가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또는 42 CFR part 2 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이 정보의 추가 사용이나 공개가 명시적으로 허용됩니다.

(ii) 귀하가 '적용 대상 기관(Covered Entity)' 또는 '업무 협력자(Business Associate)'이며, 치료, 지불 또는 보건의료 운영을 목적으로 이 기록을 수령한 경우 또는

(iii) 귀하가 45 CFR 제 164편 A 부 및 E부에 따라 적용 대상 기관 또는 업무 협력자'로부터 이 기록을 수령한 경우.

의료 또는 기타 정보의 공개에 대한 일반적인 승인(General authorization)만으로는 이 기록을 추가 사용 또는 재공개에 필요한 서면 동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(42 CFR 2.31 참조).

(Korean)